

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

제 호			
신청기관명			
연장대상 비축의료제품명	의료제품의 분류 [] 의약품 [] 의약외품 [] 의료기기		
제조번호	수량	연장 전 유효기간	연장 유효기간
연장 의료제품의 관리기준			
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